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전화 설치장소 협조 요청

1. 관련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보급 확대에 따라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공중전화에 대하여, 서비스 역할을 과거 '이동 중 공공통신수단'에서 '긴급상황 시/개인통신수단 부재시 공공통신수단'으로 변경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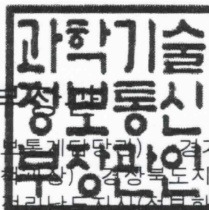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전체 운영 대수는 줄이는 한편, 지역별 분포를 고르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2016년 12월 보도자료 배포), 시행(2017년 5월) 중에 있습니다.

< 공중전화 서비스 운영 효율화 기본 방향 >

- 가. 공공성/공익성이 높거나 시설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아, 비상시/개인통신수단 부재 시 대체통신수단의 필요성이 높은 공공 시설* 선정
 - * 공공교통, 관공서·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산악지역 등
- 나. (새)우편번호구역을 기준으로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나, 공공시설은 없지만 공중전화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구역에는 적정 수준의 (구역당 1대~5대) 공중전화가 운영되도록 철거/설치 등을 유도

3. 이에 공중전화가 적정대수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역에는 철거를, 공공시설은 존재하나 공중전화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구역에는 새로이 공중전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장소 선정 등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기도지사(정보통신보안담당관), 충청북도지사(정보통신과장), 충청남도지사(정보화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정보통신과장), 경상남도지사(정보통계담당관), 전라북도지사(정보화총괄과장), 전라남도지사(정보화담당관), 강원도지사(정보산업과장), 부산광역시(자치행정담당관), 대구광역시(자치행정과장), 대전광역시(정보화담당관), 인천광역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울산광역시(자치행정과장), 광주광역시(스마트행정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ICT융합담당관)

주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유경태 통신경쟁정책 전결 2017. 11. 28.
주성원 관 과 과장 송재성

협조자

시행 통신경쟁정책과-584 (2017. 11. 28.) 접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 <http://www.msit.go.kr>

전화번호 02-2110-1924 팩스번호 02-2110-0260 / skyliyan@msip.go.kr / 비공개(5)

과학기술·ICT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